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상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4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장상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우, 김기대,
김기덕, 김정태, 김정환,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봉양순, 송도호,
송명화, 송아량, 양민규,
이광성, 이광호, 이성배,
이영실, 이정인, 임종국,
장인홍, 전석기, 홍성룡,
황규복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조례 [별표1]에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이 준공년
도('81~'91년) 별로 20년에서 30년까지 나누어져 있던 것이 '21. 1.
1. 이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의 노후도 기준이 30년 이상이 되어 불
필요한 [별표1]을 삭제하고 4층 이하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
로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[별표1]을 삭제하고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
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건축물을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
는 기준은 30년으로 정함(안 제4조제1항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“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”을 “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건축물”로 하고 “별표 1에 따른 기간”을 “30년”으로 하며, “[별표 1]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 (제4조제1항제1호 관련)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노후·불량건축물)</p> <p>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공동주택</p> <p>가. <u>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</u> : <u>별표 1에 따른 기간</u></p> <p>나.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: 20년</p>	<p>제4조(노후·불량건축물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<u>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건축물</u> : <u>30년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